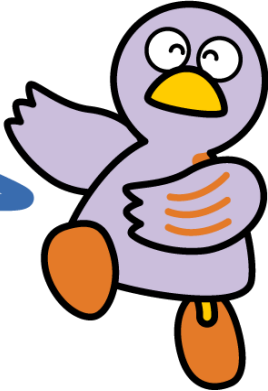


제 10 장 자동차운전면허



사이타마현의 마스코트 코바톤

- 1 외국면허 변경
- 2 운전면허증 갱신
- 3 운전면허시험
- 4 운전면허증 유효기한이 끝났을 때 수속
- 5 주소 등의 변경수속
- 6 자동차 구입과 등록
- 7 자동차보험

일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일본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거나 외국의 운전면허를 일본의 운전면허로 변경하는 심사를 받고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제네바조약 가맹국에서 교부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일본이 정령에서 정한 나라 등(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모나코, 에스토니아)의 운전면허증(일본어의 번역문이 첨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을 소지하는 분은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간 당해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동안 유효한 경우에도 자국 면허증의 유효기간 내에 제한됩니다.



상담창구 ·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접수시간 월~금(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사이타마현 경찰 운전면허센터	048-543-2001 전화 · 팩스 가이드: 048-541-1234	고노스시 고노스 405-4 교통: 다카사키센 고노스역 동쪽출입구에서 ③번 버스정류장 '면허센터행' 버스 승차후 종점에서 하차	외국면허로부터의 변경(사전상담접수): 9:30~10:00, 14:00~14:30 변경 심사접수(사전상담심사가 끝난 분에 한함): 13:00~13:45

1 외국면허 변경

외국에서 교부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은 취득한 후 통산하여 3개월 이상 그 나라에 살았다면, 일본 운전면허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사이타마현 경찰운전면허센터입니다.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여권(패스포트)
-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
- 주민표(전부 기재(개인번호 제외))
- 외국의 운전면허증
- 외국의 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각국 대사관 영사부, 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한 법인 【(사)일본자동차연맹(JAF)、(주)지퍼러스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 사진(세로 3.0×가로 2.4 cm) 2 장
- 신청수수료

이외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운전면허센터 외국면허 변경상담실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 주십시오.(사전상담에서 서류등의 확인을 받지 않은 분의 변경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운전면허증의 갱신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연령·운전경력·위반내용에 따라 3~5년이며, 유효기한은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면허증의 갱신은 갱신기간(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생일 1개월 전부터 유효기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갱신수속 장소, 접수 시간, 신청 수수료 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갱신기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 안내 통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갱신기간이 되어도 안내 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는 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여권 등 재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신청수수료

3 운전면허시험

- (1)신청장소 운전면허센터
- (2)접수일시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평일(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 15분까지 사이
- (3)필요서류 등 수험 대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
 - 주민표(전부 기재(개인번호 제외))
 - 사진(세로 3.0cm×가로 2.4 cm) 2장~3장
 - 신청수수료

※준중형·보통·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면허의 학과시험은 영어 및 포르투갈어로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증 유효기한이 끝났을 때 필요한 수속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고 유효기한이 지난 경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단, 유효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안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학과시험및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구제조치를 받아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면허증이 교부되기까지는 무면허이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수속은 운전면허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분(갱신수속을 깜빡해서 못했던 분)

가 면허증 유효기한이 지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

일정수속에 의해 학과시험및 기능시험 면제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면허증의 운전경력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 면허증 유효기한이 지난 지 6개월을 넘어 1년 이내인 경우

대형·중형·준중형·보통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졌던 분은 가면허를 학과시험및 기능시험 면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운전면허(대형 특수자동차, 자동이륜자등의 가면허가 없는 것)을 취득했던 분들은 구제조치가 없습니다.

(2)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분(입원·해외체재 등의 이유로 갱신수속을 할 수 없었던 분)

가 면허증 유효기한이 지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

일정된 수속을 거치면 학과시험및 기능시험 면제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의 취득한 운전면허의 경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면허증 유효기한이 지난 지 6 개월을 넘어 3 년 이내인 경우
부득이한 이유가 끝난지 1 개월 이내에 수속을 하면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
면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금까지의 운전경력은
유지됩니다.

(3) 필요서류 등

가 접수 일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평일(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
오후 1 시부터 오후 1 시 45 분까지 사이

나 필요 서류

- ① 유효기한이 지난 면허증
- ②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등
- ③ 주민표(전부 기재(개인번호 제외))
- ④ 사진(세로 3.0cm×가로 2.4 cm) 1 장(가면허 신청시는 3 장)
- ⑤ 「갱신 안내통지」 엽서(없어도 수속은 가능합니다.)
- ⑥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신 분은 그 이유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여권 등)
- ⑦ 신청수수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5 주소 등의 변경수속

주소나 이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의 주소 등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가까운 경찰서(코노스 경찰서는 제외) 또는 운전면허센터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본인 이름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주민표, 납세통지서, 수도요금이나 전화요금 고지서 등)
- 재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여권 등)

본적, 성명,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적, 재류자격, 재류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표(개인번호 제외) 1 통을 제출해 주십시오.

6 자동차 구입과 등록

자동차의 구입, 폐차, 주소변경, 명의변경을 했을 때는 차종에 따라 다음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종	등록장소
보통자동차및 125cc 를 넘는 오토바이	관동운수국 사이타마 운수지국 또는 각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경자동차(660cc 이하)	경자동차검사협회 사이타마사무소 또는 각 지소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각 시정촌의 시정촌민세과 등

보통자동차를 구입, 등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명의변경의 경우)

- 양도증명서(구소유자의 실인이 찍힌 것)
- 신구소유자의 인감(실인) 혹은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 신구소유자의 인감증명(발행으로부터 3 개월이내의 것)
- 자동차보관장소 증명서(발행으로부터 40 일이내의 것)※신구소유자의 주소가 같은 경우 생략 가능
- 자동차검사증(유효기간이 있는 것)
- 번호표 변경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함께 차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되어있는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이 인감증명서와 다른 경우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주민표 등)이 필요합니다.

이사(주소변경)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표(발행으로부터 3 개월이내의 것)
- ※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로부터 현재까지 연계를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관장소 증명서(발행으로부터 40 일이내의 것)
 - 소유자의 인감(약식도장가능) 또는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각각 필요합니다.
 - 자동차검사증
 - 번호표 변경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더해 차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상담창구,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접수시간
관동운유국사이타마운유지국	050-5540-2026	사이타마시 니시쿠 나카쿠기 2154-2	월~수 (공휴일, 연말연시제외) 8:45 ~ 11:45 13:00 ~ 16:00
구마가야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050-5540-2027	구마가야시 미이즈가하라 701-4	
도쿄로자와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050-5540-2029	도쿄로자와시 우시누마 688-1	
카스카베자동차 검사등록사무소	050-5540-2028	카스카베시 마시토 723-1	

사이타마 운수지국 홈페이지 URL

http://www.tb.mlit.go.jp/kanto/s_saitama/index.html

경자동차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사용자의 주민표(발행으로부터 3개월이내)
- 자동차검사증
- 신청의뢰서(대리신청의 경우)

※ 넘버변경의 경우 상기서류 이외에 자동차번호판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상담창구 ·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접수시간
경자동차검사협회 사이타마 사무소	050-3816-3110	아게오시 히라가타 료우케 505-1	월~금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8:45 ~ 11:45 13:00 ~ 16:00
경자동차검사협회 사이타마 사무소 도쿄로자와지소	050-3816-3111	미요시마치 나가이360-3	
경자동차검사협회 사이타마 사무소 구마가야지소	050-3816-3112	쿠마가야시 니이보리아자 키타하라960-2	
경자동차검사협회사무소 카스카베지소	050-3816-3113	카스카베시 시모오마신텐히 가시고우치115-1	

오토바이(125cc)의 구입 및 등록에 대하여 각 시정촌에 문의하십시오.

7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강제보험뿐이 아니라 만일의 배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의보험에도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1) 강제보험

자동차의 구입이나 차량검사를 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자배책보험)을 말합니다.

수속은 자동차판매점이나 자동차정비공장 등의 손해보험회사의 대리점에서 합니다.

(2) 임의보험

강제보험의 배상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의 보상, 자신의 차나 부상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수속은 손해보험회사 대리점 등에서 합니다.



상담창구 ·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접수시간
(일반사단법인)일본손해보험협회 손보ADR센터	내비다이얼(유료) 0570-022808 IP전화 03-4332-5241	월~금 (공휴일: 12월30일~1월4일 제외) 9:15~17:00 ※일본어로 대응 ※자동차 보험 가입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각 손해보험회사에 상담해 주십시오. 각 손해보험회사의 상담 창구 링크 https://www.sonpo.or.jp/about/efforts/adr/index.html